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8호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창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강창석 · 구점득 · 권성현 · 김경수 · 김우진
박승엽 · 박해정 · 심영석 · 한상석 의원(9명)

찬 성 의 원 : 이정희 · 황점복 의원(2명)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노인이 제1호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3.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

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
해자가 사망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조(보호구역 공표) 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
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
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 2.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 3.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4.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 6.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13. 생략)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